

<별표 7>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 <신설 2015.9.17>

대책	세부사항
내부망 보안 강화	- 업무망에 반입되는 전산자료 대상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 진단·치료 대책 수립
외부망 보안 강화	- 지능형 해킹(APT)차단 대책 수립 - 외부망을 통해 전산자료 외부전송 시 정보유출 탐지·차단·사후 모니터링 대책 수립
메일 시스템 보안 강화	- 본문과 첨부파일 포함하여 메일을 통한 악성코드 감염 예방 대책 수립 - 메일을 통한 전산자료 외부전송 시 정보유출 탐지·차단·사후 모니터링 대책 수립
단말기 보안 강화	- PC 사용자의 관리자 권한 제거 - 승인된 프로그램만 설치·실행토록 대책 수립 - 단말기 전산 자료 암호화 저장
원격 접속 통제 수립	- 원격접속 기준 및 절차가 포함된 보안정책 수립 - 불법 원격접속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인증,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 - 원격접속은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사전 등록자에 한하여 허용하며 원격접속 관리 기록부를 기록·보관 - 원격에서 접속하는 외부 단말기와 내부 업무용 시스템 구간의 암호화 통신 - 원격접속 사용자는 아이디·비밀번호 이외에 추가 인증수단을 적용 - 원격에서 접속하는 외부 단말기의 악성코드 감염 예방 대책 수립·적용 - 원격접속 가능한 내부 업무용 시스템의 접근 통제 수립·적용 - 원격으로 접속하여 수행한 모든 작업 내역 기록하고 매일 이상여부 점검 실시 및 책임자가 확인